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일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961

발의연월일: 2024. 8. 16.

발 의 자:정일영·복기왕·강준현

허성무 • 박희승 • 박상혁

허종식 • 한민수 • 박정현

이기헌 · 노종면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제50조에서 규정한 사람의 수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고 있음.

그러나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'04. 1월 기준 약 7 1.1에서 '24. 5월 기준 114.09로 무려 60% 넘게 상승했으나 해당 기본 공제 금액은 '09년 법 개정 이후 큰 변동이 없어 기본 공제액을 상향조정하는 등 서민층에 보다 두터운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음.

이에 제50조(기본공제)제1항에 명시된 금액에 2배수를 더하는 등 상향 조정함으로써 서민층에 보다 두터운 지원을 하고자 함(제50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150만원"을 "300만원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기본공제에 관한 적용례) 제5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50조(기본공제) ① 종합소득이	제50조(기본공제) ①		
있는 거주자(자연인만 해당한			
다)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			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			
수에 1명당 연 <u>150만원</u> 을 곱하	<u>300만원</u>		
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			
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			
에서 공제한다.		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		
②・③ (생 략)	②・③ (현행과 같음)		